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 
 <신설 2021. 7. 12.>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건축물현황도 열람·발급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 (개인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연락처	
신청인 (법인 또는 단체)	법인·단체명	법인등록·고유번호	
	대표자	연락처	
신청 건축물 주소	대지위치		
	도로명주소		
신청내용	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 ( 부 )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
	건축물 현황도	( )층 평면도( 층, 호)	
용도 및 목적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의 열람·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** 귀하

유의사항	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(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)로서 이용자의 안전,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,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

수수료	구분	신청 항목	방문 신청	인터넷 신청	
		열람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
		발급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

210mm×297mm(백상지80g/㎡)